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266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19. 10.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19. 10. 30.

복지문화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홍복조 의원 외 6인
- 발의일자: 2019. 10. 14.
- 회부일자: 2019. 10. 18.
- 검토기간: 2019. 10. 21. ~ 2019. 10. 25.

### 2.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나. 자립생활지원 신청 규정(안 제5조)
- 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명시(안 제6조)
- 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사항 규정(안 제8조~안 제13조)

## 4.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9조, 제53조~제56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5. 검토의견

-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라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 이에 자립생활 영위에 일정부분 애로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는 적절한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장애인복지법」 제53조)”함과 더불어 “~적절한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과 필요 재원을 조달(「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토록 하고 있음.
- 동 의안은 달서구 역시 위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게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활동급여지급(안 제7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안 제8조에서 제13조)’토록 하는 등, 구 차원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
- 동 조례안에 적용되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안 제2조제1호)이라 함은 지체·시각·청각·지적·정신장애인 등 대부분의 장애인을 규정(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하고 있는 바, 결국 동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관내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원책을 달서구는 강구해야 함.

- 그런 점에서 볼 때, 동 조례 시행에 대비하여 특히 집행부는 조례안에 규정된 ‘자립생활 체험홈’·‘자립생활 가정’ 같은 장애인 주거 공간을 (대구시와 별개로<sup>1)</sup>) 달서구 차원에서 새로이 마련함은 물론, ‘(가칭) 달서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도 별도 설치·운영해야 하는 등 향후 구 차원에서는 적지 않은 재정(예산) 투입이 예상됨.
- 따라서 동 조례 제정(취지) 및 제 관련 조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조례 시행에 맞춰 집행부가 어떤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할 계획 (2020년도 예산 반영 포함)인지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의 별도의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 기타: 조례안 일부 조문 자구에 대한 집행부 수정 의견(후단 별첨)은 위원회가 수용하여 관련 자구 수정을 함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1)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2조(자립생활체험홈) 시장은 자립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이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체험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4호)

제13조(자립생활가정 제공) [신설 2012. 12. 31 조례 제4454호] 시장은 시설퇴소 중증장애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가정을 운영한다. 다만, 대상자는 자립생활가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고 자립생활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별첨】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서

1. 발의연월일: 2019. 10. 14.

2. 발의자: 홍복조, 김화덕, 김정윤, 박정환, 안대국, 윤권근, 김인호

### 3.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자립생활지원 신청 규정(안 제5조)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명시(안 제6조)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 사항 규정(안 제8조~제13조)

### 5. 참고사항[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9조, 제53조~제56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6. 검토의견

-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이 복지의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서비스의 주체자로서의 권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8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뜻은 안 제2조(정의)제4호와 중복되므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7. 수정내용

조례안	수정안	사유
<p>제8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u>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u>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u>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u> (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안 제8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뜻은 안 제2조4호에 정의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p>

#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①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설치되며, 등록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둘 이상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여 정한다.

④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 구성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2.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4.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장애인 복지 또는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4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급자격 심의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의 결과
2. 제1호의 사항 외에 신청인의 심신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대한 조사 결과